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무역원활화추진*

Trade Facilitation for Promotion of e-Business

김선옥(Sun-ok Kim)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연구교수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e-비즈니스와 무역원활화 |
| II.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무역원활화 | V. 맺음말 |
| III. 주요국제기구의 무역원활화 논의 동향 | 참고문헌 |

Abstract

Trade Facilitation for Promotion of e-Busin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ajor issues of trade facilitation that have been discussing in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WTO, WCO, UN/ECE, and UNCTAD.

In recent years the term, trade facilitation, has become extremely popular and, therefore, applied to an ever-growing number of activities.

Trade Facilitation encompasses the simplification, standardization, harmonization and elimination of the procedures, data requirements and administration involved in a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The facilitation of trade procedures is seen by all major international business as vital for economic development. Several factors are fuelling the need for trade facilitation of which two are the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rapid IT-development. Another important factor includes increased economic integration by an explosion of regional and bilateral free-trade agreement that often feature complex customs requirements. Technological progress has also introduced faster and cheaper forms of transportation 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techniques, such as the increased use of e-business and JIT.

The Internet is also fragmenting containers of goods that could have been custom cleared on a single entry into dozens of individual shipments that each require separate customs documents and clearance procedures. This creates a challenge for express couriers who anticipate exponential growth in small shipments by individual consumers, as compared to shipment by wholesalers or retailers. These consumers expect goods to be cleared immediately. It is no wonder that express couriers are actively promoting, and participating in the trade facilitation agenda.

Key Words : Trade Facilitation, e-busin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5-B00012)

I. 머리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글로벌네트워크의 확산에 의해서 새로운 무역패턴(전자무역)을 만들어내고,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에 중심을 두어 왔던 시장개방정책에 변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들이 완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무역원활화를 제고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UNCTAD, WCO, 및 UN/ECE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각국에서는 무역거래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자간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장애가 완화됨으로써 무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개발과 확산,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에 의해서 무역거래과정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경영추구에 따라 생산시스템을 세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적시(JIT: Just In Time)공급 및 신속대응(QR: Quick Response)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역거래전반에 걸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경영 및 세계무역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무역절차와 관행에 대한 개선과 자동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그로 인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이행은 공산품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simplification)와 국제간 상이한 무역체계의 조화(harmonizing)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추진내용은 관세장벽이나 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축소 및 제거에서부터 복잡한 무역절차에 의해서 초래되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축소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자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역자동화전산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무역원활화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역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지만 고비용 구조에 의한 부가가치의 저하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¹⁾ 따라서 국제경제환경에 부응하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경제제도와 관행을 수용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이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제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역원활화의 추진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무역원활화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어 온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동향을 고찰한 다음, 우리나라에서 e-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무역원활화 정책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 e-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무역원활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무역협회의 조사(2000년)에 의하면 무역에 관련되는 비용(GDP대비)이 우리나라는 12.8%, 일본은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I.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무역원활화

1994년 UR협정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작용하여 온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예, 수량제한 등) 등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거래절차로 인한 장벽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²⁾ 국제무역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절차, 관세 등은 무역을 감시하고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에 관한 비효율적인 절차나 많은 서류 및 중복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 등은 국가간의 교역에 있어서 장애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상품의 국제적 이동 및 유통체제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무역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거래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³⁾

지금까지 무역거래절차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업무개선을 하여 왔으나, 무역 업무는 여러 관계자가 관여하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화는 기대한 만큼의 수준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 결과 다양한 무역서류에 동일내용을 전기하거나 동일한 서류를 관련 기관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등 현재의 무역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고, 새로운 니즈에 대응하여 가는 수준에서 한정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었다. 국제물류는 신속히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왔으나 무역거래절차에서는 부분적·한정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어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거래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효율화가 달성될 수 없었고, 선하증권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업의 글로벌화를⁴⁾ 배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무역구조와 대형고속선, 효율화된 하역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절차에서도 업계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역 업무는 화물을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국제물류와 통관절차, 항만업무, 민간기업끼리의 상거래 등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무역원활화에 관련되는 기관으로는 통과절차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외에도 금융기관, 보험업자, 운송인, 운송주선인, 창고업자, 하역회사, 항만이나 공항 운영자, 관세중개자 등이 포함된다.

2) ABAC/APEC의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무역장벽은 복잡한 관세규제, 관세법, 규칙 및 관리지침에 관한 정보부족(응답자의 49%),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관세결정에 관한 메커니즘(응답자의 43%)이라고 보고되었다.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Survey on Customs, Standards, and Business Mobility in the APEC Region", *A Report by APEC for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APEC)*, 2000.06.

3)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관세행정을 개혁한 후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또한 무역원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현상이 나타났다. OECD, *Trade Facilitation Reforms in the Service of Development*, TD/TC/WP(2003)11/FINAL. <http://www.oecd.org> 10, Jan., 2005.

4) 1980년대의 컴퓨터혁명은 기존의 정보전달 및 정보흡수에 관한 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업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Christin Curtis, "EDI over the Internet : Let the Games Begin", *COMM. WK.*, 1996, Sept. 9, p.59. ; Art Hutchinson, "Pushing the Envelop : Vendors Ready for War over Securing Content Control and Distribution", *COMM. WK.*, 1996, Sept. 2, p.508.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WTO(세계무역기구), 세계관세기구(WCO), UN무역개발위원회(UNCTAD),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⁵⁾, UN경제위원회(UNECE)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무역원활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한 EU, APEC, ASEM, FTAA, ASEAN 등의 지역협력기구도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 또는 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원활화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⁶⁾ 나아가 한일경제협력, 동북아협력 등의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전자무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⁷⁾

이와 같이 국제기구 또는 지역적으로 각각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가 행해짐으로써 무역원활화에 관한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또한 그 범위도 명확히 한정되어 있지 않다. 무역원활화의 범위는 통관절차, 정보교환, 표준적합, 기업인 이동, 전자적 시설, 대금결제, 운송 등과 같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전자무역을 국제무역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식됨에 따라 대체로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는 전자무역을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는 IT기술을 이용하여 수출입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를 표준화하여 무역시스템을 자동화, 전자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원활화의 추구는 국제무역전반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체제를 간소화, 표준화, 국제적 조화,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국제교역을 확대 또는 촉진하여 세계적인 경제후생(economic welfare)의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⁸⁾

- 5) OECD는 통관절차, 표준과 인증, 전자상거래의 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무역원활화를 추진하여 왔다. OECD에서 추구하여 온 무역원활화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투명성, ②일관성과 예측가능성, ③무차별성, ④ 간소화와 필요 없는 무역제한 조치의 철폐, ⑤법적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 6) 전자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일본은 일본의 무역자동시스템(TEDI)을 동남아시아국가들에게 도입하여 이용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 7)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01년 10월에 “제2차 한-일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에서 한-일간에 서류 없는 무역의 추진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하여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IT관련 자격증을 상호인증하도록 협의하는 등의 교역이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8) 무역원활화의 조치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과 이익에 관한 분석은 1999년 이후 OECD 및 APEC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APEC, 1994, "The Highlights of the APEC Survey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Singapore; APEC, 1999, "Assessing APEC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1999 Updated," APEC Economic Committee, Bangkok; APEC, 2002, *Measuring the Impact of APEC Trade Facilitation on APEC Economies : A CGE Analysis*. APEC Economic Committee, Bangkok ; APEC, 2003a, "Selection of Trade Facilitation Actions and Measures by Member Economies", Document 2003/SOM II/CTI/016, Committee on Trade Investment, Khon Kaen/Thailand. ; OECD, *Business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TD/TC/WP(2001)21/FINAL ; OECD, *Doha Development Agenda: Welfare Gains from Furthe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with Respect to Tariffs*. Document TD/TC/WP(2003)10/FINAL; WTO, *Overview of Trade Facilitation Work in the WTO*, 2003 참조.

Ⅲ. 주요국제기구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 동향

1. WTO

WTO는 1996년 제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의 선언에 따라 상품교역이사회(Council on Trade Goods: CTG)에서 무역원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후,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은 2003년 제5차 회의에서 DDA 협상 정식의제 채택여부를 결정하였다.

WTO에서의 무역원활화는 주로 통관 및 국경간 절차에 중점을 두고, 무역정보와 국제적인 상품이동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나 관행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을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에서는 무역원활화를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simplification)와 조화(harmonization)”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절차상에 있어서 ① 필요한 정보의 교환과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② 각종 행정절차를 무역과 운송의 요구사항과 더욱 합치되도록 개선하고, ③ 정부의 정보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면서, ④ 정부의 필수 통제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무역원활화를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⁹⁾ 그러나 위생이나 기술표준, 선적 전 검사, 관세평가, 기술 장벽, 원산지규정 등 무역원활화 내용의 일부는 여타 WTO 포럼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문제들을 중복하여 다루지 않기 위하여 GATT 제5조(화물의 통과)¹⁰⁾, 제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¹¹⁾,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¹²⁾를 중

- 9) 양준석, "OECD의 무역원활화 논의와 향후 과제", 「OECD FOCUS」, 2003,05, p.72.
- 10) GATT 제5조에서는 수출품이 최종 수입국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에 제3국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의 목적은 통과화물의 자유로운 영토 통과를 보장하는 것이다.
 *통관절차 및 서류요건 간소화, 표준화
 *통과화물의 불필요한 지연 또는 규제 금지
 *최혜국대우 보장
 *비차별적 대우
 *운송비 또는 행정비용을 제외한 관세 등의 면제
 *환적통과와 비환적통과의 차별화
 *수수료 및 과징금의 변동사항 통보
- 11) GATT 제10조는 통관절차와 수수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의 목적은 과도한 형식적인 절차 간소화 및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다.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투명화
 *국제적인 표준채택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투명화
 *국제적인 표준채택
 *자료요건의 축소
 *위험관리기법의 도입
 *차별금지
 *상용정보 사용 허용
 *사전판정(advanced ruling)제도 도입
 *자동화에 대한 효율성 개선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 12) GATT 제10조는 투명성과 항의검토절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의 목적은 정보

심으로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제8조는 무역원활화의 핵심으로서 그 내용은 국경통관절차와 행정절차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한 통관절차의 자동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4년 8월에 무역원활화가 공식적인 협상의제로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무역원활화 논의는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GATT 관련 조항 개선을 위해서 각국 제안서를 기초로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핵심쟁점별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 WCO¹³⁾

세관에 관계되는 대표적 국제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주로 관세행정의¹⁴⁾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속한 세관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제간의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높은 수준의 관리와 검사를 수행하며 적은 비용으로 세관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세관활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WCO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관세행정의 국제적 조화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¹⁵⁾ 예를 들면, ①관세시스템의 조화 및 간소화, ②세관개혁 및 근대화, ③관세행정의 운영 및 업무개선, ④관세당국과 국제무역기구간의 협력증진 등과 같은 세계관세행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행하고 있다. WCO의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1973년에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정, 이른바 교토협약(Kyoto Convention)이 제정되었다.¹⁶⁾ 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간소화·조화 및 효율화를 통해서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고자하는 국제적 노력의 산물로서, 이전의 단편적인 접근방법을

제공을 원활히 하여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창구의 투명성 개선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표수단 및 방식-Single National Focal Point:SNFP

*사전협의 제도 실시

*세관 행정과 무역업자간의 체계적인 협의 확대

*효율적인 상고/항소절차 개선

- 13) 우리나라는 1968년에 WCO에 가입하여 현재 WCO에서 제정한 유효국제협약(13개)중에서 HS협약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 2003년에 개정교토협약에 대한 가입수락서를 WCO에 기탁하고 있고, 나이로비협약(The Nairobi Convention), 이스탄불협약(The Istanbul Convention)에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다.
- 14) 관세행정과 관련하는 국제기구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EU정상회담(ASEM) 등이 있다. WTO는 다자간무역체제의 확립을 추진하고, WCO는 관세에 관련하는 국제규범의 조화와 제정 등의 세계관세행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APEC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 및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ASEM은 아시아-EU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 15) WCO의 보고에 의하면 관세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을 위한 경제통합, 국제무역자유화와 무역량증가, 국가의 역할변화와 효율성추구 및 새로운 세금제도이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WCO, *Survey of Customs Reform and Modernization Trends and Best Practices*, at http://www.wcoomd.org/ie/en/topics_issues/customsmodernizationintegrity/surve_e.htm 14, Feb., 2005.
- 16) 교토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은 1983년 10월 15일에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의 전문과 개정의정서는 <http://www.customs.go.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

종합화하고 체계화하여 「국제관세법」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WCO에서는 교토협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무역환경, 무역량 급증, 운송 및 행정기술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1994년부터 협약의 개정에 착수하여 1999년에 개정(안)을 완성하여 현재 각국에서 가입하고 있다. 개정된 교토협약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조화에 의한 자동화의 활용, 정보기술의 최대한 실제적용, 위험관리기법(risk management techniques)의 활용, 예를 들면, 사전적 통제방식에서 사후통제방식으로 전환 등 무역절차에 의한 장벽에 대한 국제적관심 등의 요인이 그 개정배경이다.

개정교토협약은 개정의정서(Protocol of Amendment)를 통하여 비준되고¹⁷⁾ 국가간에 물품의 이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WCO는 세관관련 무역원활화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WCO에서의 논의가 WT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수준을 사실상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WCO에서 세관관련 무역원활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WTO에서는 무역원활화에 관한 원칙을 세우고, WCO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실천사항을 만드는 것으로 두 국제기구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¹⁸⁾

3. UN/ECE

UN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1960년대부터 무역원활화에 관련하는 각종 권고안(recommendations)을 개발·제정하여 왔다. 동위원회가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1959년에 북유럽국가에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그룹의 창설을 제안한 것이 그 계기였다. 그 후 동그룹은 1972년에 제4작업반(Working Party 4 또는 WP 4)으로 불려지는 국제무역절차의 원활화작업반을 만들고나서부터 훨씬 활성화되었다. 동작업반은 1997년에 행정, 상업, 운송절차 및 관행의 원활화 센터(CEFACT: Center for Facilitation of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로 재편되었으나 국제무역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의해서 2000년에 무역원활화 및 전자상거래센터(UN/CEFACT: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로 불려지게 되었다.

동 작업반은 무역원활화의 목적을 거래비용의 감소에 두고서 간소화, 효율화, 불필요한 절차의 제거, 서류의 국제적 조화와 전송되는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세계적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여 왔다.¹⁹⁾ 동 작업반은 전자자료교환(EDI)을 위한 국제적 표준인 UN/EDIFACT(Electronic Data

17) 개정교토협약은 기존협약가입국(61개국)중에서 40개국이 수락한 후, 3개월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

18) 이장수, 임혜준, 박지현, 양준철,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 8.

19) <http://www.unece.org/oes/about/trade.htm> 17 Jan., 2005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를 제정하였다.²⁰⁾

UN/ECE는 EDI 이외에도 무역원활화의 조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관해서도 중점을 두고, UNCTRAL 및 ICC와²¹⁾ 협력하여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활동도 행하여 왔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2000년 5월에는 전자상거래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협정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였다.²²⁾

4. UNCTAD

UNCTAD는 1970년대부터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무역원활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UN의 기능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UN유럽경제위원회가 UN개발프로그램(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으로 하여금 UNCTAD의 국제적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한 후, UNCTAD는 무역원활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본격적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후 UNCTAD의 활동이 크게 확대되고, 1973년에 UNCTAD와 ECE는 UNCTAD가 세계적 차원에서 기술적 전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1975년에는 무역원활화특별프로그램(FALPRO: Special Program on Trade Facilitation)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사무조직을 설립하였다. 1992년 UNCTAD의 제8총회에서는 무역효율화의 전문가작업그룹을 UNCTAD내에 창설하고, 동그룹은 국제기구의 제안사항을 지원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무역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1994년의 UN무역효율성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콜롬버스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후 무역원활화의 프로그램인 FALPRO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특별프로그램(SPTE: Special Program for Trade Efficiency)에 통합되어, 1996년에 무역효율화 및 개발을 위한 서비스인프라국(SITE: Division of Services Infrastructure for Development and Trade Efficiency)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SITE에서는 국제무역사무소네트워크(GTPNet: Global Trade Point Network)²³⁾, 관세소프트웨어프로그램(ASYCUDA: 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²⁴⁾, 화물사전정보시스템(Cargo Tracking, ACIS: Advance Cargo Information System)²⁵⁾, 개발도상국지원프

20) UN/EDIFACT는 정보를 표준화 또는 코드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운송, 은행, 보험, 통계, 여행, 관세, 건설, 보건, 고용 등의 전산업을 포괄하여 개발되었다.

http://www.unece.org/trade/untdid/texts/d100_d.htm 17 Jan., 2005

21) ICC는 무역원활화의 지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www.BATF-Action.net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UN/ECE, "International Forum on Trade facilitation", ECE/TRADE/306/Add.1, 6 June 2003.

22) UNECE Recommendation N° 31. <http://www.unece.org/cefact/rec/rec31en.htm> 7, Mar., 2005.

23)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회에서 서울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무역업자, 은행, 정부기관 및 다른 무역관련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24) ASYCUDA는 관세에 관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으로서, UNCTAD에서 개발하여 1985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4년 2월을 기준으로 약 7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취지는 세관의 근대화를 도모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관행 및 표준을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업그레이드되어 기존의 기능 이외에 혁신적 기능이 추가되어 ASYCUDA++라고 한다.

로그그램(TRAINFORTRADE) 등의 무역원활화와 관련지어서 다양한 활동을 행하고 있다.

5. APEC

APEC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TILE: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그리고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중심으로 지역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APEC는 창설당시부터 무역 및 투자 원활화가 자유화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89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무역원활화의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서 채택하여 왔다. APEC 비전을 제시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²⁶⁾에서도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보고르 목표 실천의 기본골격을 제시한 오사카 행동의제(Osaka Action Agenda: OAA)도 개별실천방안(Individual Action Plans: IAPs)과 공동실천방안(Collection Action Plans: CAPs) 제도를 마련하여, 세관(customs)²⁷⁾, 표준화(standard and conformance)²⁸⁾ 및 사업가 이동(business mobility)²⁹⁾으로 구성되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1999년의 오클랜드 정상회담에서 「무역원활화기본원칙」(APEC Principles on Trade Facilitation)을 제정하도록 합의한 후 무역원활화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행해져 그 결과 2000년 2월에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내에 무역원활화 특별작업반을 만들고, 그 CTI에서 무역원활화의 비구속성 및 자발성원칙(non-binding and voluntary principles)을 제정하여 2001년 6월에 투명성, 간소화, 새로운 기술의 사용 등을 포함한 9개의 무역원활화의 일반원칙을 발표하였다.³⁰⁾

최근 APEC는 무역원활화에 관련하는 워크숍을³¹⁾ 개최하는 등의 무역원활화에 관련되는 그 동안의

25) 이 시스템은 운송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통해서 운송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운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ACIS는 특히 복합운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서, 철도추적시스템(Rail Tracker), 항만추적시스템(Port Tracker), 호수/강 추적시스템(Lake/River Tracker) 및 도로추적시스템(Road Track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운송방식의 화물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http://www.porttracker.org/intro.html> 26 Jan., 2005.

26) 보고르목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도국의 경우 2020년까지 이룩하자는 것이다.

27) 세관과 관련하여 상품이동, 서류의 투명성, 서류없는 무역, 국제무역분류 일체화, 일시반입, 전문인력 등에서의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8) 표준화와 관련하여 상호인정, 국제기준 일치, 규제부담, 요건의 투명성, 규제자의 전문성 개선을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29) 사업가 이동은 APEC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의제로서, 비자규제, 체류기간, 사업 여행자의 신분증 등을 논의하였다.

30) 무역원활화를 위한 9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투명성(transparency), ②상호의사교환 및 협의(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s), ③간소화, 예측가능성과 효율성(simplification, predictability and efficiency), ④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⑤일관성 및 예측가능성(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⑥조화, 표준화 및 인정(harmonization, standardization and recognition), ⑦현대화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modernization and the use of new technology), ⑧공정한 과정(due process) ⑨협력(cooperation)이다. http://www.apec.org/apec/ministerial_statements/sectoral_ministreal/trade/2001_trade.html

31) 2000년 9월에 “APEC 무역원활화의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 및 경제개발과제”의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APEC 무역원활화의 중요성, 범위 및 장래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온 무역원활화조치간의 시너지 및 상호보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기되었다.

http://www.apec.org/apec/ministreal_statements/sectoral_ministreal/trade/2000_trade.html

성과를 가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기업 및 전문인력이동, 전자상거래 즉, 4분야에서 논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자 APEC전략(e-APEC Strategy)을 지향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서류무역(paperless trade) 및 e-APEC 전략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³²⁾ 무역원활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³³⁾

2003년에 한국을 포함한 13개 회원국은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APEC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in) 이행현황을 제출하고, 각회원국간의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구체적인 무역원활화조치(trade facilitation measures)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³⁴⁾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APEC에서 논의하여 온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작업은 사업가 이동을 제외하고는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와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APEC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는 협상(negotiation)보다도 「협력과 기술지원」(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APEC의 기구적 특성과 추진방향에 비추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IV. e-비즈니스와 무역원활화

글로벌화된 경영체제하에서 원재료, 부품, 부분품 또는 완성품에 대한 국경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무역의 상당부분이 기업내(intra-company)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생산시스템을 세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적시공급(JIT) 및 신속대응(QR)과 같은 경영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역거래 전반에 걸쳐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모든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위해 e-비즈니스를 위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원활화는 항만을 통한 재화의 이동 및 국제무역 관련서류의 이동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진, 세관 및 규제환경의 투명성 증가, 표준의 조화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무역원활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화, 자동화가 그 중심역할을 할 것으

32) http://www.apec.org/apec/ministerial_statements/sectoral_ministrial/trade/2002_trade.html

33) APEC기업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s Council)의 요청에 의해서 CANADA 아시아태평양재단(APEC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은 무역원활화에 관련된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APEC 역내의 461개 기업(선진국 53%, 개발도상국 7%)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제한적 행정규정 및 관세를 포함한 통관절차가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무역장애로서 인식하고 있었다(응답자 53%).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통관절차를 가장 심각한 무역장애로서 인식하고 있었다(응답자 69%). APEC, Survey on Customs, Standards, and Business Mobility in the APEC Region. 2000.

34) http://www.apec.org/apec/ministerial_statements/sectoral_ministerial/trade/2003_trade.html

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세관통관분야에 있어서 개혁과 무역·통관 자동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역원활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또한 전자화, 자동화를 통한 무역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하여 통관절차 및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교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무역원활화 관련 조치들을 도입하여 온 것이다.

e-비즈니스는 수출입 절차, 국경간 상품이동, 대금결제 및 제반 금융여건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무역원활화의 핵심분야와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보요건의 표준화,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IT를 사용한 무역자동화체제의 도입 등은 e-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국에서 e-비즈니스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인력, 자원,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들은 e-비즈니스를 위한 무역원활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통신인프라, 무역자동화시스템, 법적·제도적 기반, 정부의 적극적인 인 지원의지 등의 면에 있어서 e-비즈니스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및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1. e-비즈니스 추진기관 및 추진프로젝트

1) 기술표준원³⁵⁾

산업자원부산하의 기술표준원(ATE: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CIE)에서는 전자거래에 관련된 통신메시지, 전자문서표준 및 전자데이터교환기술, 전자화폐 및 금융거래 등의 전자지불시스템, 전자카탈로그분류 및 검색기술, 전자거래에 필요한 암호화, 보안 및 인증기술, 전자거래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응용기술 등 전자거래분야와 관련된 기술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 전자거래표준화통합포럼³⁶⁾

전자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 Integrated Forum On Electronic Commerce)은 2000년 6월에 설립된 민관합동의 비영리단체로서, 전자거래의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관하여 상호의논하고, 총괄적인 조정을 통하여 전자거래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동 포럼은 전자거래에 관련된 표준화기관으로서, 기업 및 전문가 등이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자거래분야에서의 국가표준화의 기본계획인 로드맵을 비롯하여 전자문서, 전자카탈로그, 제품모델, 전자거래기반, 전자지불 등 분야별로 시급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표준을 제정하여 왔다.

35) <http://www.ats.go.kr> 8 Mar., 2005.

36) <http://www.ecif.or.kr> 8 Mar., 2005.

그동안 전자거래표준화통합포럼에서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는 전자거래표준화로드맵의 개발, 표준 개발 및 선행연구, 전자거래표준의 보급·확대 및 각종행사 개최, 국제표준화활동에의 참가활성화 및 공동대응체제의 구축 등의 작업을 행하였다.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³⁷⁾

정보통신부산하의 연구기관이며,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제도·산업의 연구를 통하여 전문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기관의 설립취지에 따라 정보화 사회의 실현 및 그에 관련된 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에 관한 과제를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정보화사회추진계획 및 정보통신분야의 경제정책책정에 기여하고 있다.

동 연구기관은 2003년 전자거래에 관련된 연구사업으로서 e-비즈니스에서의 네트워크외부성의 중요성 및 시준점에 관하여 연구하여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한 「정보거래법」 제정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M-commerce의 확대에 따른 공정한 경쟁에 관한 문제점의 분석 등을 추진하였다.

4) 한국무역정보통신³⁸⁾

한국무역정보통신(Korea Trade Net: KTNET)은 1992년에 산업자원부의 지원 하에 무역협회에 의해서 수출입무역절차의 전반적인 EDI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거래처발굴에서부터 통관, 물류,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무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EDI 서비스, DB 서비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수단의 보급에서부터 시스템구축에 이르기까지의 무역 업무에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역자동화의 완성을 토대로 축적된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e-비즈니스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해외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도 도모하고 있다.

KTNET을 이용하여 무역거래를 전자적으로 이행한 결과 무역거래에 관한 관련비용이 20%정도 절약되고 또한 평균적인 거래기간도 종래의 19-28일에서 4-7일로 단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³⁹⁾⁴⁰⁾

KTNET은 주로 무역에 관련한 E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기업간의 수발주 EDI서비스나 물류 EDI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한 무역업자의 대부분이 KTNET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KTNET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무역관련 네트워크나 금융네트워크, 보험네트워크, 물류네트워크 등과 접속함으로써 전체적인 기업간 EDI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 접

37) <http://www.kisdi.re.kr> 8 Mar., 2005.

38) <http://www.ktnet.co.kr> 8 Mar., 2005.

39) http://www.ktnet.com/edi/edi_service05_01.html

http://www.ktnet.com/edi/edi_service05_02.html

2002년 3월에 런던에서 개최된 블레로 은행 멤버간의 회의에서도 무역거래를 전자적으로 대체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비용절약이 있었다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속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무역거래를 포함한 상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결제면에서는 KINET는 주로 「금융네트워크」와 「무역네트워크」, 또는 「금융네트워크」와 「통관네트워크」와의 접속에 의해 여러 가지 무역금융 E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I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관련서비스는 수출신용장통지, 수입신용장통지, 송장통지, 수출어음매입(추심), 수입대금결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 수출입신고 등이다. KINET에서는 해외의 VAN등과의 접속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EDI네트워크인 TRADEGATE 및 대만의 TRADE-VAN 네트워크와 접속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세관당국과는 AT&T사와 미국의 EDI의 네트워크의 하나인 ADVANTIS를 통하여 접속하고 있다. 또한 Bolero.net 서비스와 전략적 사업 제휴 관계를 체결하고 앞으로 외국과의 접속 및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며 보다 글로벌한 무역금융EDI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한국전산원⁴¹⁾

한국전산원(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NAC)은 1987년 정부통신부산하의 정부출원기관으로서 설립되어, 국가의 정보화추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정보강국건설을 위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전자 정보화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Industry	Savings*
Aerospace Machining	11%
Chemicals	10%
Communications	5 - 15%
Computing	11 - 20%
Electronic Components	29 - 39%
Food Ingredients	3 - 5%
Forest Products	15 - 25%
Freight Transport	15 - 20%
Life Sciences	12 - 19%
Machining(Metals)	22%
MRO - Maintenance, Repair, Operating Supplies	10%
Oil & Gas	5 - 15%
Paper	10%
Steel	11%

출처 : Goldman Sachs, 2000. Analysis Compared b2b Techniques with traditional business methods, such as paper, phone, fax or value added networks.

40) 인터넷이 기업에 제공한 이익(예, 광고비용감소 등)에 대해서는 Mary Jo Dively, "The New Laws that Will Enable Electronic Contracting : A Survey of Electronic Contracting Rules in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and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Duq. L. Rev., 2000, Vol.38 pp. 209-212. ; Onelia Collazo, E-tailing, LatinFinance(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999, June, p.48. 참조.

41) <http://www.nca.or.kr> 8 Mar., 200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최적의 방법론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사회전반에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차세대 e-비즈니스국가모델 및 정책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e-비즈니스와 관련된 국가의 비전 및 전략을 책정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e-비즈니스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 및 기업간의 협력과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6) 한국전자거래진흥원⁴²⁾

한국전자거래진흥원(Korea Institute for Electronic Commerce: KIEC)은 국내의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산하의 전자상거래분야에 있는 민간기관으로서, 전자상거래기본법(Framework Act on Electronic Transaction)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전자문서 등의 전자상거래의 표준화 및 보급사업, eTrust 인증마크의 부여,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역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ECRC)의 운영,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인재개발센터의 운영,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지정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디지털경제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기업의 정보화와 전자상거래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7) 한국전자거래협회/기술협회⁴³⁾

한국전자거래협회/기술협회는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전자거래협회(산업자원부 산하)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및 관련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전자거래기술협회(정보통신부 산하)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회는 국내의 전자상거래발전을 위하여 산업부문·업종별 B2B의 모델사업, 다국간의 국제협력사업, 전자카탈로그기술의 표준화사업, 산업기반기금으로의 융자사업 및 산업지원사업, e-비즈니스기업인연합회, DB 및 컨설턴트사업, e-비즈니스교육 및 출판사업, 각종 이벤트 및 광고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8) 한국커머스넷⁴⁴⁾

한국커머스넷은 온라인상거래, 무선상거래, Telematics 관련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등 인터넷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정보통신부산하의 비영리단체로서, 전자상거래의 표준화 및 국제제휴, 전자상거래정책의 개발 및 제언, 국내전자상거래업계의 의견수렴 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진

42) <http://www.kiec.or.kr> 8 Mar., 2005.

43) <http://www.kcals.or.kr> 8 Mar., 2005.

44) <http://www.cnk.or.kr> 8 Mar., 2005.

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커머스넷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국내기술력의 국제경쟁력강화지원사업, 국내전자상거래, M-Commerce, Telematics 등, 신기술활성화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e-비즈니스 활성화 정책

우리나라는 전자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련법률 및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에서 발표한 2003년도 전자상거래정책추진계획에 의하면 법제, 물류, 결제 등의 분야에 있어서 e-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계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까지 전자거래비율을 30%정도로 높여서, 기업경영의 효율화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2002년)의 심의를 통하여, e-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책정(2002년 6월 20일)하고, 2005년까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전자상거래활성화종합대책(2000년 2월)」에 이어서 그 후 「e-비즈니스확대 국가전략」을 책정·시행하여, 정책중심을 전자거래에서 e-비즈니스로 발전시켰다. 또한 종합대책과 확대전략에 반영된 정책과제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추진·점검하면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e-비즈니스화를 촉진하여 e-비즈니스강대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 전자거래에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UNCITRAL 모델법을 기본으로 한 「전자거래기본법」(전문개정(제정: 1999.02.08, 전문개정:2002.01.19, 시행일 2002.07.01),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한 「전자서명법」(제정:1999.02.05, 일부개정:2001.12.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2002년 3월 20일, 일부개정:2005년 1월 27일) 등 전자거래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조달사업법시행령을 개정(2002년 9월)하고, 정부의 전자조달(G2B)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SCM과 CRM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2002년 11월)를 인정하는 등 전자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2003년에는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송장, 인수증, 서면의 보관, 제출 등을 규정한 개별법을 정비하여, 서면대신에 전자문서형태로 보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의 상호이용 등 전자거래활성화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2) e-비즈니스화 가속화

e-비즈니스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업종간의 제휴, 분류체계의 통합, 물류기반 등 업종별로 e-비즈니스기반을 확충하고, IT화 사업의 실현, IT화에 의한 협력, 업종별의 ASP보급 등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02년 9월에 개발이 완료한 G2B 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G2B 시스템의 위탁운영, 고객평가제의 실시, 조달업무지침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와 네트워크 구축

전자무역과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통합전자무역플랫폼, 인터넷기반의 전자무역네트워크, E-무역상사의 육성 등, 전자무역기반을 정비하고, ASEM, OECD 등과의 국제협력과 일본, 중국, 영국 등과의 e-비즈니스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B2B의 인프라구축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용모델을 개발하는 등 전산업의 e-비즈니스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결제, 신용보증, 물류 등 공통기반을 가진 서비스간의 협력도 도모하고 있다.

4) 전자거래인프라확대

전자거래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은 정보통신망, 전문적인 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등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을 2005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또한 광통신망을 5개 도시로 확대하고, VDSL, 무선 LAN 등을 보급하는 등 초고속정보망을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e-비즈니스 전략기술과 지능형 비즈니스 기반기술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ebXML의 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전자거래표준 등에 관련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 무역원활화를 위한 과제

1) 통합된 인프라구축 필요

영국통상산업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적응도를 나타내는 「e-business」 마인드의 부분은 세계1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수준은 6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통신망보급률 95%, 인터넷접속률 100%, 중소기업 web site 보유율 97%, 온라인구매율 34% 등으로 선진국들보다도 앞서서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전략적 활용은 낮게 평가되었다.⁴⁵⁾ 이렇게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는 계약이전단계와 통관부분의 자동화라고 하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⁴⁶⁾

정부가 KNET를 통하여 추진하여 온 e-비즈니스 활성화정책은 보다 글로벌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또한 주로 무역자동화에 집중하여 추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⁴⁷⁾ 그 결과 e-비즈니스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시행기관 간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일부의 대기업에서는 인터넷EDI를 위한 무역자동화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상당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⁴⁸⁾ 따라서 인터넷에서 수출입승인, 통관, 결제, 수출입물류 등의 무역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single window) 통합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관련업계의 참가 확대

무역원활화는 주로 제조품의 교역을 대상으로 교역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품의 수출비중이 높고, e-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제도도 상당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무역원활화를 통한 거래비용의 절약에 수반되는 소득증가 뿐만이 아니라 교역확대효과의 이익도 창출될 것이다.

무역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총수출입증에서 e-비즈니스 거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기업(16.4%)보다도 중소기업(18.9%)이 높고,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도 e-비즈니스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e-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경우 VAN/EDI사용료가 비싸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무역자동화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수집 등과 같은 계약체결이전의 단계에서 e-비즈니스를 활용하고 있고, 계약체결이후의 단계에서의 신용장, 선적서류업무, 대금결제 등은 기존의 오프라인 관행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V. 맺음말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e-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KNET을 중심으로 하여 무역·통관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무역원활화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각 국제기구에 있어서

45) YTN 뉴스 2004.02.17.

46)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종합물류종합정보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서, 화물운송정보시스템(CVO),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 인터넷EDI시스템 등의 다양한 물류시스템을 개발, 추진하여 왔다.

47) KNET을 통하여 추진한 무역자동화는 수출통관 및 물류부분은 100% 자동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8) 무역전자화의 선두기업인 삼성이나 POSCO 등의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자무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당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고 있다.

무역원활화에 관한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합의도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무역원활화의 주요 내용은 국제표준채택, 과도한 무역관련 서류 또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절차의 축소 또는 폐지, 정보의 단일창구(single window), 일관통관(one stop)절차, 통일된 서류양식의 채택, IT를 이용한 자동화 체제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역원활화의 조치가 무역거래절차의 간소화, 효율화 등과 관련되어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초래하고 세계교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원활화의 논의 범위와 협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무역원활화를 시장접근의 기회로서 인식하고, WTO에서의 신규규범제정 및 그 강제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WTO에서 규범화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서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한층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정을 고려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지원 등과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개도국들이 무역원활화의 조치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는 한정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지현, "DDA 무역원활화 논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세계경제 Focus」, 2003.
- 손찬현, 윤진나,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e-Trade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양준석, "OECD의 무역원활화 논의와 향후과제", 「OECD FOCUS」, 2003.
- 이은섭, 「한국대외통상법」, 진영사, 2000.
- 이장수, 박혜준, 박지현, 양준철,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외교통상부, 「WTO DDA 협상 기본골격합의문 채택」 보도자료, 2004.
- Art Hutchinson, "Pushing the Envelop : Vendors Ready for War over Securing Content Control and Distribution", *COMM. WK.*, 1996.
-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Survey on Customs, Standards, and Business Mobility in the APEC Region", *A Report by APEC for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APEC)*, 2000.06.
- APEC, "Survey on Customs, Standards, and Business Mobility in the APEC Region". 2000.
- _____,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 From Shanghai to Bogor*, 2004.

- _____, "Assessing APEC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1999 Update", *APEC Economic Committee, Bangkok*. 1999.
- _____, "Measuring the Impact of APEC Trade Facilitation on APEC Economies", 2002.
- _____, "Selection of Trade Facilitation Actions and Measures by Member Economies", *Document 2003/SOM II /CTI/016, Committee on Trade Investment, Khon Kaen/Thailand*. 2003.
- Christin Curtis, "EDI over the Internet : Let the Games Begin", *COMM. WK.*, 1996.
- OECD, "Trade Facilitation Reforms in the Service of Development", TD/TC/WP(2003)11/FINAL. <http://www.oecd.org> 17, Feb., 2005.
- _____, "Business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TD/TC/WP(2001)21/FINAL.
- _____, Doha Development Agenda: Welfare Gains from Furthe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with Respect to Tariffs. Document TD/TC/WP(2003)10/FINAL.
- WCO, Survey of Customs Reform and Modernization Trends and Best Practices, at http://www.wcoomd.org/ie/en/topics_issues/customsmodernizationintegrity/surve_e.htm
- WCO, *Revised Kyoto Convention*, 2004 <http://www.wcoomd.org>
- _____, "WCO Work on Trade Facilitation", *WTO Negotiation Group Meeting*, 2004.
- WTO, "Trade Facilitation-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G/C/W/150, 1999.
- _____, "Article X of the GATT 1994-Scope and Application". G/C/W/374. May. 2002.
- _____, "WTO Doha Work Programme: Draft General Council Decision of 31 July 2004", WT/GC/W/535. http://www.unece.org/trade/untdid/texts/d100_d.htm 14, Feb., 2005.
- <http://www.unece.org/oes/about/trade.htm> 10, Jan., 2005.
- <http://www.unece.org/cefact/rec/rec31en.htm> 14, Feb., 2005.
- <http://www.porttracker.org/intro.html> 26 Jan., 2005.
- http://www.apec.org/apec/ministerial_statements/sectoral_ministreal/trade/2001
- http://www.apec.org/apec/ministreal_statements/sectoral_ministreal/trade/2000
- http://www.apec.org/apec/ministerial_statements/sectoral_ministreal/trade/2002